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72
----------	--------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며, 장애인 가족 지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가족 지원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수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 2)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10. 8. ~ 10. 28.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검토의견 미반영
-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같은법 제31조(실태조사)에
관련 내용 있음.
- 6)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11.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욕구 등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 상담
3.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인식개선 등 교육
4. 장애인 가족의 긴급 돌봄 등 지원
5.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행기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 중인 센터는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제6조(지원사업), 제7조(수행기관 지정 등)
- 수입발생 요인 : 없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
- 비용추계기간 : 2020. 11. ~ 2024. 12. (50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이후 계속)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시비 보조금	14,444	86,666	87,966	89,285	90,625	368,986
	구비 보조금	14,444	86,666	87,966	89,285	90,625	368,986
	소계(b)	28,888	173,332	175,932	178,570	181,250	737,972
□ 총 비용(a-b)		28,888	173,332	175,932	178,570	181,250	737,972

4. 재원조달 방안

- 매년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지원

5. 덧붙이는 의견

-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김영은 (☎8873)